

2026

보험계리사, 공인노무사 퇴직급여법

엠북 노동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합 정리
- ✦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 1시간 18분 완성

도서명 : 퇴직급여법

ISBN : 979-11-7393-208-3

발간일 : 2026-03-10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10,500원



퇴직급여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5)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p11)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p2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p38)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p57)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p81)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p87)

제7장 책무 및 감독(p110)

제8장 보칙(p128)

제9장 벌칙(p138~143)

[약어]

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부령은 고용노동부령

운용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연금기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기금표준계약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가입자계정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

사용자계정은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

관리업무는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공단은 근로복지공단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3조

1. 목적

-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설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함
-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

2. 정의

1)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3)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 임금, 봉급 등 명칭 불문, 지급하는 모든 금품

4)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5) **급여**는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에 의해 근로자에 지급되는 연금이나 일시금

6)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급여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기업형**),

퇴직금제도

7) 퇴직연금제도는 급여형, 기여형, 개인형

8) 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 결정

9) 기여형은 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 결정

10) 개인형은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나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안됨

1)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나 기업형에 가입한
자

2) 적립금은 가입자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나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

3)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된
자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에 한정,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
급여 지급

5)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 않은 때 사전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 운용

6)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승인 받은
운용방법

3. 적용범위

-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에 적용
-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내 고용활동에 적용안함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4~12조

1.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설정 요

- 예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나) 퇴직급여제도 설정시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와 부담금 산정방법 적용 등에 관해 차등
두지 못함

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시

- 근로자 과반 가입한 노동조합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이하
근로자대표) 동의받음

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시 근로자대표 의견 들어야 함

-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받음

2.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때는 제외)된 사업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내 급여형이나 기여형 설정 요

3. 사용자의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가. 급여형/기여형 함께 설정시

1) 급여형 급여

-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급여형규약**)상 설정 비율 곱함

2) 기여형 부담금

- 부담금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기여형규약)상 설정 비율 곱함

나. 상기 1)과 2)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해

퇴직연금제도 설정 요

4. **수급권의 보호**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형 포함

가. 퇴직연금제도 급여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로 제공못함

나. 가입자는 다음 사유와 요건 갖춘 때
대통령령상 한도내 퇴직연금제도 급여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 가능

- 등록된 사업자(기업형의 경우 공단)은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게
협조 요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a)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